

교육부공고 제 2024 - 172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교육부장관 이주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첫째,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점검 의무화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24.2.27.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둘째, 기본재산 관할청 신고범위의 처분가액을 상향(5억 → 20억)하여 사립대학(법인)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재산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대학(법인) 적립금 공시 의무화(안 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 신설)

적립금 사용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적립금으로 분류하여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나. 사립대학(법인) 적립금 실태점검 의무화(안 제14조의8제3항 신설)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 적립금 사용내역' 등이 '사립학교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다.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처분 신고 범위 확대(안 제11조제5항 개정)

기본재산 처분과 권리포기 신고범위를 5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하여 사립대학(법인)의 재정여건 개선과 재산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38

- 전자우편 : oscar99@korea.kr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법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경영 혁신지원과(044-203-6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 항 제7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5억원”을 각각 “20억원”으로 한다.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2제4항”을 “법 제32조의2 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8(적립금 공시 및 실태점검) ① 법 제3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장이 공시하여야 하는 성격에 따른 적립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의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특정목적적립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내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4호의15서식에 기재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른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의 실태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이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되었는지 여부

2. 법 제3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여부

3. 법 제3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

4. 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 그 투자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

5. 법 제32조의3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 여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립금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1항과 제2항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 ④ (생략)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5억원 미만)인 경우	3. ----- ----- ----- ----- ----- ----- -- 20억원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무의	7. -----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의무의 부담가액은 해당 부담가액을 포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가. ----- ----- ----- ----- 20억원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5(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4조의5(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5항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제14조의8(적립금 공시 및 실태점검) ① 법 제3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

는 학교법인의 장이 공시하여야 하는 성격에 따른 적립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의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특정목적적립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내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4호의15서식에 기재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른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의 실태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이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되었는지 여부
2. 법 제3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

계로 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여부

3. 법 제3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

4. 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 그 투자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

5. 법 제32조의3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 여부